

#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

##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개요

### □ 개요

- 종전 신고·납부할 납부할 법인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 왔으나, 2014.1.1.이후 소득 발생분<sup>1)</sup>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.
-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·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·감면한 후
-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 하도록 규정

개편전 <부가세방식>	개편후 <독립세방식>
법인세 총결정 세액 * 부가세율(10%) ⇒ 지방소득세 법인세분	법인세 과세표준 * 지방소득세율 <sup>2)</sup> - 공제·감면 ⇒ 법인지방소득세(세목변경)

1) 2014. 1. 1.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발생분

2) 법인지방소득 세율 : 1% ~ 2.2% 누진세율 체계

-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. 1. 1.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, 2015. 1. 1. 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·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 [지법 §103조의29]